



문서번호	사회복지과-3078
결재일자	2015.2.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생활보장팀장	사회복지과장	주민생활국장	
조성희	신성희	남강우	02/02 박기웅	
협조				

**2015년도
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추진계획**



성 동 구

【사회복지과】

- 적정의료이용과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한 - 2015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추진계획

질병·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합리적 의료이용 안내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지원, **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도모**

I 추진근거

■ 법적근거: 의료급여법 제5조의 2(사례관리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
■ 2015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안내

II 추진방향

-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
-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합병증 발생 최소화
- 보건·복지·의료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
-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여 적정의료이용 도모

III 일반 현황

■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(2014. 12월말 기준)

(단위: 명)

계	1 종						2 종	
	국민기초	입양아동	국가유공자	광주민주화	북한이탈	군입대자 등기타	국민기초	군입대자
6,066	3,366	17	261	26	61	220	2,075	40

■ 의료급여수급권자 연령별 현황(2014. 12월말 기준)

(단위: 명)

계	0세-39세	40세-49세	50세-59세	60세-69세	70세-79세	80세이상
6,066	1,812	886	1,024	784	1,052	508

■ 의료급여수급권자 질환군별 365일 초과자 현황(2014. 12월말 기준)

(단위: 명)

계	고시질환	기타질환	희귀난치질환	중증등록질환
1,470	640	766	27	37

IV 세부추진계획

■ 의료급여 사례관리 지역 유형 및 관리 인원

○ 유형: 성동구, 외래 고위험지역

(상대적으로 신규 의료수급권자 많고, 외래이용 고위험군이 많은 지역)

○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연간 사례관리 인원

지역 구분	(A)장기입원자	(B)고위험군	집중관리군	신규수급권자	총계
외래 고위험	5~15명	75~85명	10명	전수관리 (200명)	300명

※ (A)+(B) 총합 90명 관리 (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지침)

■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

- 관리 대상: 수급권 최초 취득자 및 재 취득자
- 관리 기간: 1개월
- 수행 방법: 서신발송(1회이상), 전화(필요시), 집합교육(반기별 1회이상)
- 내 용
 -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차이점과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 병의원제도 등 안내
 - 의료급여수급자가 적정 의료이용을 하도록 지원

■ 고위험군 사례관리

- 관리 대상: 질병대비 과다이용자로 의료쇼핑, 비합리적 의료이용, 약물과다,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대상자
- 대상자 선정: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대상자 및 보장기관 자체발굴
- 관리 기간: 3개월
- 수행방법: 개별 방문 및 전화 상담, 서신(안내문) 발송, 자원연계
- 내 용
 - 요구사정영역에 따라 대상자별 목표를 설정하여 중재
 - 대상자별 문제에 따른 상담, 교육 등 지지서비스 및 자원연계
 - 의료급여제도 이해, 합리적 의료이용, 질병관리능력향상,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

■ 집중관리군 사례관리

- 관리 대상: 단기간의 개입으로는 의료이용행태가 변화되지 않아 지속적 관리 및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
 - 사례관리 대상자 통보명단의 질병대비 부적정과다의료이용자 중 상위 30% 이내인 자
- 관리 기간: 연중관리(12월 중 종결)

■ 장기입원 사례관리

○ 목 적

-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의 경우 외래이용 전환,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 등 자원연계를 통하여 수급자의 자기관리능력 향상
-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여 적정의료이용을 도모 및 재정안정화 기여

○ 대상자 선정 기준

- 장기입원자(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자)
- 부적정 입원자(1일 이상 반복 입퇴원자, 숙식목적으로 입원하는 자 등)
- 장기입원자 및 부적정입원자가 있는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

○ 개입기간

- 기관: 연중실시(1월~12월)
- 개인: 6개월

○ 수행방법: 정보 및 자료제공, 공문 발송, 서신, 전화, 방문 교육, 자원연계 및 의뢰 등

○ 상담관리내용

- 적정 장기입원인 경우: 주치의와 면담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
- 부적정 장기입원인 경우: 퇴원 유도하면서 필요한 자원연계
 - ▶ 장기요양 대상: 재가서비스 연계 등 해당 자원연계
 - ▶ 입원비 관련: 긴급의료비지원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연계
 - ▶ 자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: 시설입소 연계
-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
 - ▶ 장기입원자 자료제공 협조 요청 및 방문교육, 필요시 간담회 개최

○ 장기입원 사례관리-심사연계

- 목 적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연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
- 연계대상: 사례관리 중 수급자 측면 사유 외에 병원의 협조가 안되어 퇴원 어려운 대상자 등
- 연계방법: 의뢰서식에 의거 매월 23일까지 시·도 제출

■ 대상자별 목표관리 및 세부일정

○ 사례관리 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

분 류	사례관리 기 간	목표관리 횟수			
		방문	전화	서신	집합교육
장기입원자	6개월	2회	6회 이상	수시	-
고위험군	3개월	2회	4회 이상		
집중관리군	12개월	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례관리 기법 적용			
신규의료급여 수급자(전체)	1개월	-	필요시 전화	1회이상	반기별 1회이상

○ 사례관리 세부 일정

구 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업 무 명	연간계획 및 대상자 선 정	사 례 관 리 수 행	사 례 관 리 수 행	분 기 대 상 자 선 정	집 합 교 육, 사 례 관 리 수 행	사 례 관 리 수 행	분 기 대 상 자 선 정	사 례 관 리 수 행	사 례 관 리 수 행	집 합 교 육, 분 기 대 상 자 선 정	사 례 관 리 수 행	사 례 관 리 수 행
사 례 관 리	고위험군 (75~ 85명/연)	20명		20명			20명			20명		
	집 중 관 리 군 (10명)	10명										
	신 규 대 상 자 관 리 (200명)	18명	19명	19명	18명	18명	18명	18명	18명	18명	18명	18명
	장 기 입 원 자 (5~15명)	5~15명(연별 적정배정 관리)										
건 강 정 보 지 및 안 내 문	고위험군 집 중 관 리 군		발송			발송			발송			발송
	신규군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
	연 장 승 인 대 상		발송			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
교 육	세부계획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테이핑요법(특화사업)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지원예정 - 신규수급자 제도 교육 연2회 실시(집합교육) - 의료급여관리사 직무교육 및 회의 등 참석 										

III

기 대 효 과

- 수급권자의 건강악화 요인인 약물남용, 의료쇼핑 등의 행태변화 및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
-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불이익 방지
- 적정 의료이용 형태 변화를 통한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도모

IV

행 정 사 항

- 사례관리 대상자의 기초조사서 및 수행내용 등을 행복e음에 입력 및 공단 전송
- 동주민센터, 의료기관, 보건소, 복지관 등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